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57811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1. A

2. B

3. C

피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4. D

변론 종결 2021. 6. 23.

판결 선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5,421,697원 및 그 중 252,235,452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2,977,627원 및 그 중 72,067,272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망 E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47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 및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2,977,627원 및 그 중 72,067,272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 1) 원고는 2017. 3. 6. 피고 A과 한도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2조는 상환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고, 2020. 7. 21.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8%이다.

제12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원고는 2017. 3. 6. G은행에 보증금액 95,000,000원과 154,850,000원인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합계 263,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의 신용보증기간은 2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20. 3. 4.까지였다.

4) G은행은 2020. 3. 5. 원고에게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21. G은행에 95,907,016원과 156,328,436원 합계 252,235,45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2,430,545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 A과 E는 보증기한 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95,000,000원 보증에 대하여 287,340원(= $95,000,000\text{원} \times 0.8\% \times 138/365$ (2020. 3. 5. ~ 2020. 7. 20.)), 154,850,000원 보증에 대하여 468,360원(= $154,850,000\text{원} \times 0.8\% \times 138/365$ (2020. 3. 5. ~ 2020. 7. 20.)) 합계

755,700원의 미수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

E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D에게 2019. 1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4784호로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사망, 상속 및 한정승인

E는 2020. 7. 28. 사망하였고, 피고 A, B, C은 E의 재산을 각 3/7, 2/7,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2020. 8. 24. 춘천지방법원에 2020느단512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0. 12. 24.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상속비율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252,235,452원, 채권보전비용 2,430,545원, 미수위약금 755,700원 합계 255,421,697원 및 그 중 252,234,4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7.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C은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속지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72,977,627원 및 그 중 72,067,2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7. 2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이 2017. 3. 6. 이루어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채무자인 피고 A이 G은행으로부터 2억 6,300만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G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88,000,000원과 316,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8. 5. 24.자로 근저당권자 H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2018. 6. 26.자로 근저당권자 I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이 추가 설정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③ 2019.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춘천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세금을 체납하고 수 개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못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멀지 않은 2020. 3. 5.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여 E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행의사

1) E의 채무초과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인인 2019. 11. 15.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가 844,945,400원이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으로 1,511,943,76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E가 사망한 후 수개월 내에 채권자들이 경매절차 등에서 미변제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E의 소극재산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G은행	511,888,304
I	50,000,000
H	150,000,000
J	100,000,000
K	61,288,057
원고	255,421,697
L	11,928,931
M	7,030,864
춘천시	5,488,000
N	23,528,941
O	11,328,872
피고 D	324,040,100
합계	1,511,943,766

피고 D은 E가 2019.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억 원, 기계설비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시세가 당시 14억 원에 이르렀다거나, E가 2억 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쳐준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E에게 2016. 1. 20.부터 2019. 10. 1.까지 총 324,040,1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직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기계설비를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한 1억 원을 체납된 세금납부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E와 피고 D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11. 8. E의 미납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E와 피고 A이 운영하던 P의 미납 4대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 D이 아들인 E에게 3년 이상 수십 회에 걸쳐 송금한 돈을 모두 차용금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E와 피고 D의 관계에 비추어 E의 세금체납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경부터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E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2019. 11.경에 비로소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 D 주장과 같이 14억 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E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 D의 사해의사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 D의 선의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 E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순현

판사정은영

판사김민수

별지